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1 조 (총칙)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연구원 원장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연구원 원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다목 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과 일반용역을 포함한다.

제 3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이 인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신용보증기금 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채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에금증서
 6. 신탁업 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연구원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방은 당해 계약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보증금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 5 조 (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용역입찰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 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된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제 7 조 (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용역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용역착수 이후에 계약담당자로부터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기술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용역 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업무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 8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연구원 예산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90 일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1.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로서 품목 조정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계약 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한다.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을 계약체결당시 선정한 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등락율과 계약단가를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하고 이에 수량(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을 곱하여 산출한 품목 또는 비목 금액을 합계한다.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제경비 등을 포함한다.)

다. “나”목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으로 나누어 100분의 3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한다.

라. “나”목에 의하여 등락폭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단가가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보다 높고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및 계약단가보다 높은 때에는 그 등락폭은 이를 물가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서 계약 단가를 감한 금액으로 하며, 물가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은 때에는 그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마.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한 때에 총기술용역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등락율은 총 용역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 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율(이하 “조정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 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연구원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폭풍, 호우, 전쟁, 화재, 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이하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한다)로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계약당사자에게 선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며 그 공제 금액의 산출 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품목조정율 x 선금지급율

제 9 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 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연구원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과 순차로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 목적물이 연구원 정책 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 1항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련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 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 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일반적 손해 및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등) ① 용역목적물의 인도전에 용역 목적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필한 기성 부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 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계약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그 용역목적물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3 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③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공제하며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0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 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9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대상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 ⑦ 제2항 또는 제4항의 대가지급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제 14 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연구원 채무부담 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로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 10조 제 2항 단서 및 제 13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연구원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 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 16 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연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 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7 조 (종업원 및 고용인) ① 계약 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용역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기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계약담당자의 동의 없이는 당해 용역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 18 조 (계약의 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상의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 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연구원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 ⑤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측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19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연구원 계약 업무 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가 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 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른 기관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연구원에서도 그 제한을 받게 된다.

제 20 조 (전시조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담당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용역 수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 21 조 (기술 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연구원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연구원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2 조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에 따라 수급업체의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과기연) 또는 수급업체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작업현장에 "작업중지요청제"에 대하여 부착물 게시 및 안내하여야 한다.